

행정자치부가 함께하는  
**“청렴하고  
 깨끗한 정부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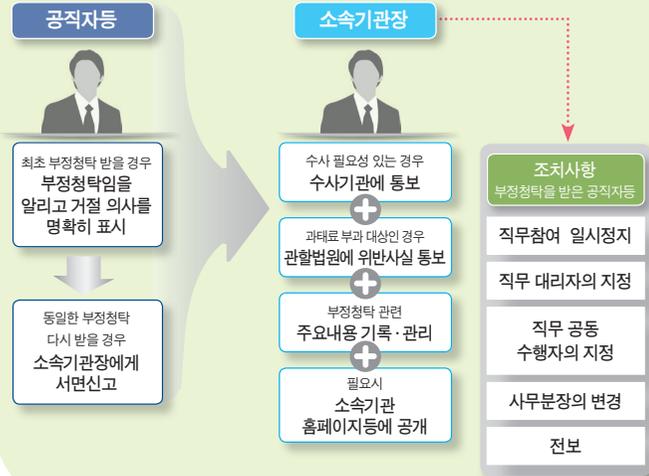


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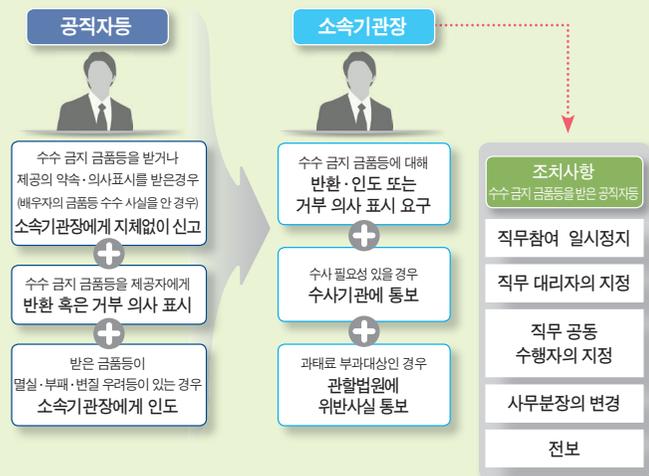
## 신고·처리 절차



### 부정청탁 신고·처리



### 금품수수등 신고·처리



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·인도한 경우 형사처벌·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

## 위반 행위 유형별 제재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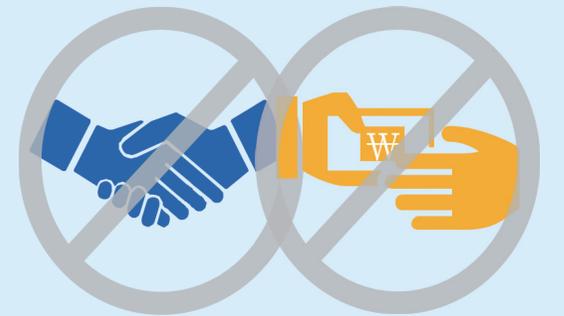


유형	위반행위	제재 수준
부정청탁 금지	본인을 위한 부정청탁 •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※ 공직자가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징계책임	제재 없음
	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•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	1천만원 이하 과태료
부정청탁 금지	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• 일반인의 부정청탁	2천만원 이하 과태료
	• 공직자등의 부정청탁	3천만원 이하 과태료
금품수수 금지	•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	•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-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-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수수 금지	•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-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-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
	• 외부강의시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	500만원 이하 과태료
기타	•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•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	•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•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기타	•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	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	•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, 출석,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	3천만원 이하 과태료



# 청탁금지법 바로알기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

# 부정청탁 금지



## ● 금지행위 14개 유형



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 
공직자들의 지위·권한 남용

## ● 허용행위 7개 유형

- 1 법령·기준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-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- 3 선출직 공직자, 정당,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
-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·요구하거나 확인·문의 등을 하는 행위
-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을 신청·요구하는 행위
-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·제도·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- 7 그 밖에 사회상규(社會常規)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

## ● 부정청탁시 처벌

### 과태료

제3자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
→ 1천만원 이하

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민간인)  
→ 2천만원 이하

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
→ 3천만원 이하

### 형사처벌
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
→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,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.

# 금품등 수수 금지



## ● 금지행위 4개 유형



## ● 허용행위 8개 유형

-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2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
-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-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
-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·재난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-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
- 8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(社會常規)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
## 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

### 과태료

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
→ 수수금액 2배 이상, 5배이하

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 
→ 500만원 이하

### 형사처벌

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
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